

베트남민법의 체계와 특성*

정진명**

<목 차>

- I. 서론
- II. 베트남민법의 기본원칙
- III. 권리의 주체
- IV. 권리의 객체
- V. 민사의무와 민사계약
- VI. 기타의 규정
- VII. 결론

I. 서론

민사에 관한 법률은 세계 각국에서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왔으며, 각 국가의 정치, 경제상황에 맞게 발전하여 왔다. 특히 민법은 인간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민사의무의

* 이 글은 베트남민법 및 베트남민법 소개서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필자가 베트남어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민법을 소개한 다른 언어로 된 자료들도 찾을 수 없어 이 글에서는 베트남민법의 개괄적 모습만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 글은 베트남민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아닌 법조문의 소개에 불과하며, 이러한 이유로 별도의 주를 달지 않기로 한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이행과 권리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베트남도 1950년 5월 22일 칙령 제79/SL을 통하여 민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으며, 1975년 4월 30일 통일 후 새로운 정치,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민법관련 법령을 제정,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상황의 변동에 따라 민법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자 베트남은 1980년 새로운 민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베트남조국전선, 사회기관의 대표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민법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에서는 1995년까지 15년간 각국의 민법을 연구하여 베트남민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베트남민법은 1995년 10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995년 11월 9일 국가주석이 이를 공포하였다. 전문과 7편 838조로 구성된 베트남민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베트남민법은 1991년 6월에 개최된 제7차 공산당대회에서 채택한 “베트남공산당 강령” 및 1992년 개정 헌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베트남민법을 계승 발전하고 1992년의 개정 헌법을 구체화한 현행 민법은 국가법률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에 있어서 민법은 민사교류를 촉진하고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수단이다. 특히 이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의 관리체계 하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따라 다부문 상품경제를 건설하고, 부민강국, 공평, 문명사회라는 목표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발전해 온 민법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어떠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베트남민법의 기본원칙

베트남민법 제1편 “총칙”은 제8장 171조로 구성되었다. 제1편 총칙은

모든 분야에서 개인, 조직 및 기타 주체의 민사권리, 의무의 실현에 관한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편 제1장은 베트남민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민사관계는 자발적이고, 양당사자의 의지를 존중하며, 상호평등, 권익존중, 상호협력 및 상호충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민사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법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 과거 중앙집권적 경제체제 하에서 상실되었던 개인의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즉 민사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는 자발적이고 상대방의 의지를 존중하여 행하여야 하며, 상대방을 억압, 강요, 위협 또는 저지함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없다(제7조 참조). 또한 민사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는 상호 선의로 충실히 행하여야 하며, 자기의 권리나 이익을 도모하는 데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국가이익, 공공이익,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도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 상호 민사권리와 의무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9조 참조). 그리고 민사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는 모두 평등하고 상호 협력하여 행하여야 하며, 민족, 성별, 사회성분, 경제환경, 신앙, 종교, 문화수준, 직업에 관하여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제8조 참조).

둘째, 민사관계에 있어서 약속, 합의는 강제이행의 효력이 있다. 이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법률준수의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 민사에 관한 국제조약을 존중하고 민사교류에 대한 질서를 확립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모든 합법적인 약속, 합의는 당사자에 대하여 강제이행의 효력이 있으며(제7조 3문 참조), 이에 규정된 기본원칙을 위배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 당사자는 자기의 민사상의 의무를 성실히 실현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실현하지 않거나 또는 성실히 실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제10조 참조).

셋째, 민사관계는 법률, 사회도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의 성립 및 실현은 국가이익, 공공이익, 기타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제2조 참조). 그러므로 당사자는

민사관계에 대하여 민법의 근거, 순서, 절차 및 기타의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3조 1문 참조). 여기서 민사권리와 의무는 본 민법의 근거, 순서, 절차 및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약속, 합의할 수 있다(제3조 참조). 그리고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의 성립 및 실현은 각 민족의 아름다운 도덕적 가치, 모든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풍속, 습관, 전통, 단결, 상부상조 정신을 존중하여야 한다(제4조 1문 참조).

넷째, 개인, 법인 및 기타 주체의 민사권은 존중되고 법률로 보호받는다. 이는 민사관계에서 서로 다른 주체간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민주, 평등의 관점에서 인간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법률적 관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은 민사권 보호를 위하여 개인, 법인 및 기타 주체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법원,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① 소유권 인증, 상속권 인증과 같은 대상에 대한 민사권 인증, ② 위반을 한 개인, 법인 및 기타 주체에 대한 위반행위 중지, ③ 개인, 법인 및 기타 주체에 대한 민사의무 강제, ④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제12조 참조).

Ⅲ. 권리의 주체

1. 개인

(1) 능력

민법상 모든 공민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민법능력을 가진다. 여기서 민법능력은 민사권과 민사의무를 가지는 개인의 능력이다(제16조 제1, 3항 참조). 따라서 공민은 ① 재산에 결부되지 않은 인신권 및 재산에 결부된 인신권, ② 재산에 대한 소유, 상속 및 기타 권리, ③ 민사관계 참가권 및 그 관계로부터 발생된 의무가 있다(제17조 참조). 이러한 개인의 민법능력은 법률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지 않는

다(제8조 참조).

만 18세 이상인 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있다(제20조 참조). 여기서 민사행위능력은 자기의 행위로서 민사권리와 의무를 확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이다(제19조 참조). 그러므로 만 18세 미만의 자가 민사교류를 할 때에는 그들의 합법적인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가 민사의무능력을 실현할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대표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민사교류를 할 수 있다(제22조 참조). 한편 만 6세 이하의 어린이에 관한 민사교류는 그 어린이의 합법적인 대표가 행하여야 한다(제23조 참조). 또한 자기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없는 환자는 그 사람의 합법적인 대표가 그에 관한 민사행위를 대리한다.

(2) 인신권

민법에 규정된 인신권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모든 개인과 관련된 민사권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신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인신권을 남용하여 국가이익, 공공이익,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제26조 참조). 개인의 인신권이 침해당하면 ① 위반행위 중지, 사과, 공개사과를 위반자 또는 법원에 요구할 수 있고, ② 자기 스스로 대중통신 수단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③ 물질에 관한 손해 및 정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반자 또는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제27조 참조).

인신권에는 성·이름에 대한 권리, 성·이름 개명권, 민족 확정권, 사진에 대한 개인의 권리, 생명·건강·신체에 관한 안전보장을 받을 권리, 명예·인격·위신을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에 관한 권리, 결혼권, 부부의 평등권, 가정에서 각 구성원간에 돌봄을 받을 권리, 이혼권, 부·모·자 인정권 및 불인정권, 양자를 기를 수 있는 권리 및 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국적에 대한 권리, 주거에 관한 안전보장을 받을

권리, 신앙·종교자유권, 왕래·거주자유권, 노동권, 경영자유권, 창조자유권이 있다(제28조 내지 제47조 참조).

2. 법인

어떠한 조직이 ①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등록 또는 공인을 받고, ② 조직기구가 있으며, ③ 개인, 다른 조직에 대해 독립된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으로 스스로 책임을 지며, ④ 자기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법률관계에 참가하면 법인으로 본다(제94조 참조). 이 때에 법인은 개인, 경제조직,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 사회기금, 자선기금의 창의를 따라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제95조 1문 참조).

법인의 민사법률능력은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시점에 발생되며, 법인 종료시점에 종료된다. 만일 법인의 활동을 등록하여야 하면 법인의 민사법률능력은 등록 시부터 발생된다. 여기서 법인의 민사법률능력은 자기의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권리, 의무를 가진 법인의 능력을 말한다. 만일 법인이 활동 목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허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96조 참조).

법인은 법인의 조직과 종류를 명확히 나타내고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법인과 분별할 수 있는 베트남 말로 개별명칭을 가져야 하며, 민사교류에서 자기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법인의 명칭은 법률로 공인 및 보호받는다(제97조 참조).

법인은 대표자가 법인명의로 확립, 실현한 민사권리 및 의무의 실현에 관한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이 때에 자기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법인은 구성원이 법인명의로 아닌 다른 명의로 확립, 실현한 민사의무에 대하여 법인의 구성원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의 구성원은 법인이 확립, 실현한 민사의무에 대하여 법인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103조 참조).

3. 가구·협동조

가구·협동조는 민법에 규정된 새로운 주체이다. 가구는 공동 호구로서 공동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각 구성원이 공동재산을 가진 민사관계의 주체이다(제116조 참조).

가구는 가구의 공동이익을 위한 민사거래에서 가구를 대표하며, 가구의 대표자에 의한 민사거래는 전 가구의 권리 및 의무에서 발생한 가구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확립, 실현하여야 한다(제117조 참조). 그리고 가구의 공동재산은 각 구성원이 함께 조성한 또는 공동에게 증여된 재산 및 각 구성원이 가구의 공동재산이라고 합의한 기타의 재산으로서 가구는 이러한 공동재산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만일 가구의 공동재산이 가구의 공동의무를 실현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면 각 구성원은 자기의 개별재산으로 연대책임을 진다(제119조 참조).

협동조는 생산, 경영을 하기 위해 재산, 현금을 출자한 여러 사람들의 합작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민사관계의 주체이다. 협동조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경우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법인자격으로 활동을 등록할 수 있다(제120조 참조). 그러나 베트남민법은 가구와 협동조에 대하여는 개인이나 법인과 같이 광범위한 민사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IV. 권리의 객체

1. 재산 및 소유권

베트남민법은 권리의 객체로서 재산과 소유권을 들고 있으며, 여기서 재산은 실제로 있는 물건, 돈, 유가증권 및 각 재산권을 포함한다(제172조 참조). 이에 대하여 소유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점유권, 사용권 및

재산 확정권을 포함한다(제173조 참조). 여기서 법률이 소유권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재산은 등록해야 한다(제174조 참조).

재산의 소유주는 재산에 대해 자기 의사에 따라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국가이익, 공공이익,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나 이익에 손해 및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제178조 참조). 이 범위 안에서 개인, 법인 및 각 주체의 소유권은 법률로부터 공인 및 보호를 받는다. 소유권은 아무도 불법적으로 제한, 점유할 수 없으므로 소유주는 자기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저지하고 보호할 권리가 있다. 다만 국방, 안녕, 국가이익을 위해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주체의 재산을 매입 또는 보상, 징발할 수 있다(제175조 참조). 그리고 소유주가 아닌 사람도 그 재산의 소유주와 합의에 따라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소유권에 속하지 않는 재산점유, 사용권, 재산 확정권을 가진다(제180조 참조).

2.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점유권, 사용권 및 재산 확정권을 포함한다. 점유권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재산을 스스로 보관, 관리하는 소유주의 권리로서, 소유주가 아닌 사람도 소유주로부터 양도받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산점유권을 가진다(제189조 참조). 소유주 자신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주는 재산을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자기의 의지에 따라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주의 소유권 행사는 법률, 사회도덕에 위배하여 행위할 수 없다. 그리고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양도하거나 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주의 점유는 시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191조 참조).

사용권은 소유주의 공용개발, 그 재산으로부터 수확물, 이익의 향유권이다. 소유주가 아닌 사람도 소유주로부터 사용권을 이전 받거나 또

는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 재산사용권이 있다(제198조 참조). 소유주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용 개발한 소유주는 자기의 의지에 따라 재산으로부터 수확, 이익을 향유한다. 그러나 국가이익, 공공이익,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나 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제199조 참조).

확정권은 자기의 재산 및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소유주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소유주는 매매, 교환, 증여, 대차, 상속 또는 다른 확정 형식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제201조 참조). 이 때에 재산의 확정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현하여야 한다. 만일 법률에 재산확립의 순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순서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제202조 참조).

3. 소유형식

베트남민법은 전인민소유, 집단소유, 개인소유제도에 입각하여 전인민소유,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의 소유, 집단소유, 개인소유,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의 소유, 혼합소유, 공동소유의 7개 소유형식을 규정하고 있다(제179조 참조).

첫째, 전인민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토지, 산림, 강, 수원, 지하자원, 바다, 대륙붕에 있는 자원 및 영공 그리고 국가가 각 기업, 각 부문에 속한 프로젝트에 투자한 재산과 법률이 국가의 재산이라고 규정한 자본 등이다(제205조 참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에 대한 소유 대표이며, 정부는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을 올바른 목적에 효과적으로 절약하여 사용함을 보장하며 통일 관리한다(제206조 참조).

둘째,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의 소유란 정관에 규정된 공동목표 실현을 위한 그 조직의 소유로서, 이에 속하는 재산으로는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구성원의 출자자원, 공동에게 증여된 재산 및 기타 재원이

다. 그리고 국가가 전인민소유에 속한 재산을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러한 재산도 그 조직의 재산에 포함된다(제215조 참조).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은 그 조직의 직능실현을 위하여 자기 소유에 속한 재산을 점유, 사용, 확정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 공용개발 및 확정은 법률을 준수하고 정관에 규정된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의 활동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제216조 참조).

셋째, 집단소유는 개인, 가구가 정관에 규정된 공동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본과 노동력을 함께 출자한 협동조합 또는 기타의 안정된 집단경제 형식의 소유이다. 이에 속하는 재산으로는 회원의 출자재원, 생산경영에서 얻은 합법적인 수입, 국가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기타 재원으로부터의 지원금이다(제218조 참조). 집단소유에 속한 재산의 점유, 사용 및 확정은 그 집단의 정관에 부합하고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생산확대, 공동경제 발전 및 이익, 각 구성원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용개발을 하도록 각 구성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이 때에 집단의 구성원은 집단소유에 속한 재산의 매입, 임대우선권이 있다(제219조 참조).

넷째, 개인소유는 자기의 합법적인 재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로서, 個體所有, 小主所有, 個人資本所有가 포함된다(제220조 참조). 개인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는 합법적인 수입, 재물, 주택, 생활도구, 자본, 수확물, 소득 및 개인의 기타 합법적인 재산 등이며, 이는 수량, 가치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221조 제1문 참조). 개인은 생활수요, 소비 또는 생산, 경영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 소유에 속한 재산을 점유, 사용, 확정권이 있으며, 국가이익, 공공이익,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나 이익에 손해 및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제222조 참조).

다섯째,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의 소유는 각 구성원의 공동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형식의 소유로서, 각 구성원의 출자재원, 공동에게 증여된 재산 또는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의 재원이 이에 속한다.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은 법률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활동목적에 부합하

게 자기 소유에 속한 재산을 점유, 사용, 확정할 수 있다(제225조 참조).

여섯째, 혼합소유는 서로 다른 경제구성원에 속한 각 소유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경영을 위하여 자본을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형식으로서, 각 소유주가 출자한 자본, 생산, 경영활동으로부터 얻은 합법적이윤 또는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재원이 이에 속한다(제227조 참조). 이에 속한 재산의 점유, 사용, 확정은 각 법률규정과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일곱째, 공동소유는 재산에 관한 여러 소유주의 소유형식으로서,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와 합병 공동소유가 이에 포함된다.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는 공동재산에 대하여 각 소유주의 소유권 지분이 확정된 소유형식으로,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 지분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제231조 참조). 이에 대하여 합병 공동소유는 공동재산에 대하여 각 소유주의 소유권 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소유형식으로,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제232조 참조).

V. 민사의무와 민사계약

1. 서

민법은 각 재산관계와 소유관계, 계약상의 의무와 계약외 의무, 손해배상관계, 상속관계, 지적 소유관계, 외국인이 관련된 민사관계 및 각 분야에 속한 민사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민법은 개인이나 법인이 민사관계 참여시에 법률로서 그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그러므로 민법에서는 많은 규정이 민사의무와 민사계약에 관한 부분에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자발적 참여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민사관계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면 분쟁 해결을 위한 근거기준이 있어야 한다. 민사의무와 민사계약은 민법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민사의무

(1) 민사의무의 성립

민사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나 또는 다른 수 개의 주체의 이익을 위해 하나 또는 수 개의 주체로 하여금 하나의 일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하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제285조 참조). 특히 민법은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은 법률과 사회도덕에 위배되지 않는 합의내용이면 민사의무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의무는 ① 민사계약, ② 일방적 민사행위, ③ 점유, 재산사용, 법률적 근거 없이 재산에서 이익을 얻은 것, ④ 법률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권한위임 없이 일의 실행, ⑥ 법률이 규정한 기타의 근거에 의하여 발생한다(제286조 참조).

민사의무는 당사자의 “법적 구속”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일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가진 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도록 또는 어떠한 일을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민사의무의 대상은 ① 재산, 꼭 해야 할 일 또는 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어야 하며, ② 정확히 지정되어야 하며, ③ 거래 가능한 재산 및 실현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하고 법률이 금지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도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제287조 참조). 그리고 민사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협력정신에 따라서 약속대로 법률 및 사회도덕에 위배되지 않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288조 참조).

(2) 민사의무의 실현

민사의무는 합의에 따라서 또는 법률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만일 합의가 없고 법률이 보장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반환 및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한 의무는 전부 보장받은 것으로 간주된다(제325조 참조). 이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① 재산저장, ② 재산담보, ③ 공탁, ④ 예치, ⑤ 기금예치, ⑥ 보증, ⑦ 위반벌금을 규정하고,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를 가진 자는 그 보장방법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제324조 참조). 이와 같이 민사의무 이행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재산에 관한 의무관계에서 권리를 가진 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의무를 가진 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민사의무 실현을 보장하는 물건으로는 돈, 채권, 주식, 기타 유가증권 등이며, 이는 보장하는 사람의 소유권에 속하여야 하며 또한 교류가 허가되어야 한다(제326조 참조). 그리고 보장인의 소유에 속한 재산권도 모두 민사의무의 실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요구권을 가진 사람은 의무이행을 위해 그 재산의 매각을 주장할 수 있다.

3. 민사책임

민사책임이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이다. 그러므로 민사책임을 규정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주체들이 민사관계에 참가시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의무를 가진 자의 의무이행을 보장하고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의무를 가진 자가 ① 민사의무를 실현하지 않거나 또는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하고, ② 불가항력 사건으로 민사의무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합의가 있거나 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③ 만일 민사의무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 완전

히 권리를 가진 자의 과실이면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제308조 참조).

민사의무를 실현하지 않은 또는 올바르게 실현하지 않은 자는 고의적인 과실 또는 무의식적인 과실이 있을 때 다른 합의가 있거나 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진다. 여기서 고의적으로 야기한 손해란 어떤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분명히 안 사람이 계속 실현하고 원하던 원치 않던 손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경우이며, 무의식적으로 손해를 일으킨 경우란 어떤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이다(제309조 참조).

이러한 민사책임에는 ① 손해배상책임, ② 물건인도를 실현하지 않은 책임, ③ 해야 할 일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의무를 실현하지 않은 책임, ④ 민사의무를 늦게 실현한 책임, 민사의무 실현을 늦게 접수함에 따른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① 위반자로 하여금 어떠한 물건을 넘기거나 또는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거나, ② 권리를 가진 자가 의무를 가진 자를 대신하여 어떠한 일을 스스로 하고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③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④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민사계약

(1) 민사계약의 성립

민사관계의 기본원칙은 자기의 권리와 의무의 확립에서 모든 개인, 법인 및 다른 주체의 자유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베트남민법은 민사계약을 민사의무, 권리의 확립, 변경 또는 종료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고 규정한다(제394조 참조). 그러므로 민사계약은 ① 법률, 사회도덕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② 자발적으로 평등, 선의 및 협력, 충실 및 정직하게 체결하여야 한다(제396조 참조). 이와 같이 민사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되면 당

사자에 대하여 강제적 효력이 있으며, 일단 체결된 계약은 합의가 있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수정, 파기될 수 있다. 만일 다른 합의가 있거나 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은 체결 시점부터 효력을 가진다(제404조 참조).

민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법률로 정하며, 만일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그 내용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합의할 수 있는 계약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인도하여야 하는 재산, 꼭 하여야 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 ② 수량, 품질, ③ 가격, 청산방법, ④ 계약시한, 지정, 실현방법, ⑤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⑥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당사자는 이러한 내용 이외에도 다른 내용을 합의할 수 있다(제401조 참조).

(2) 민사계약의 실현

민사계약은 협력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그리고 당사자 쌍방에 이익이 되도록 실현함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이익, 공공이익,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제409조 참조). 그리고 당사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수정 및 수정결과의 해결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제417조 참조). 또한 상대방이 당사자가 합의한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파기조건인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제419조 참조). 그 이외에도 상대방이 당사자가 합의한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정지조건인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 실현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손해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제420조 참조).

한편 민사계약은 ① 계약이 완성되거나, ②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③ 개인, 법인 또는 그 주체가 실현하여야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기타 주체가 종료되거나, ④ 계약이 파기 또는 정지되거나, ⑤ 계약의 대상이 없어져 계약을 실현할 수 없거나, ⑥ 법률이 규정한 기타의 경우에는 종료된다(제418조 참조).

5. 계약의 책임

베트남민법은 고의적인 과실이나 또는 무의식적인 과실로 개인의 생명, 건강, 명예, 인품, 위신, 재산, 기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법인 또는 다른 주체의 명예, 위신, 재산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09조). 여기서 손해는 원칙적으로 전부 배상되어야 하며,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으로, 현물로 또는 어떠한 일을 실현하는 것으로 배상 방식을 합의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율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은 사람 또는 손해를 일으킨 사람은 배상을 변경을 법원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제610조 참조).

VI. 기타의 규정

1. 토지사용권 관련 민법규정

베트남민법은 1992년 개정 헌법과 1993년 토지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제690조 내지 제744조에서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토지는 전인민소유에 속하여 국가가 통일 관리한다. 그러므로 개인, 가구의 토지사용권은 국가가 토지를 교부 또는 임대로서 확정하며, 본 법 또는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게 토지사용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됨으로서도 확정된다(제690조 참조). 그리고 토지사용권의 교환, 양도, 임대, 담보는 본 법 및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통해 실현되며, 토지사용권 이전 계약은 관할권을 가진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승인서가 있는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제691조 참조). 그 이외에도 토지사용권 이전은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서 절차를 밟고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 가구는 법률이 토지사용권 이전을 허가한 경우에만 토지사용권을 이전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요건으로는 ①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토지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발급한 토지사용권 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② 토지사용 기한이 남아 있어야 하고, ③ 본 법 및 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권 이전 허가를 받았어야 하며, ④ 분쟁이 없는 토지이어야 한다(제693조 참조). 토지사용권 이전시 양당사자는 본 법 및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한 토지사용권 이전 계약의 내용에 합의할 권리가 있으며, 토지사용권을 이전 받은 당사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토지교부 결정에 기재된 올바른 목적, 기한 그리고 그 지방계획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토지를 잘 보존하고 비옥하게 하며 인접 및 주변토지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695조 참조). 토지사용권 이전 계약이 토지에 관한 법률 및 법이 정한 토지사용권 이전 조건, 내용, 형식을 위반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토지는 회수될 수 있고, 거래된 재산 및 얻은 이윤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다(제697조 참조).

2. 지적소유권 관련 민법규정

베트남은 1992년의 개정 헌법 제60조, 1989년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법령, 1994년 저작권보호법 등을 통하여 저작권, 공업소유권을 보호하여 왔다. 1995년 베트남민법은 이에 관한 규정들을 제745조 내지 제825조에서 보다 구체화하였다. 저작권은 작가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작가의 인신권 및 재산권을 포함하는 중요한 민사권 중의 하나이다(제750조 참조). 그러므로 민법은 작품소유주, 저자 및 저자의 인신에 관한 권리, 공동저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 공동저작권 상속, 공동저자의 상속에 대한 규정을 대폭 보완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업소유권은 발명, 유익한 해결방법, 공업모델, 상품과 상표에 대한, 상품원산지명에 대한, 법률이 규정하는 기

타의 대상에 대한 개인, 법인 및 기타 주체의 소유권이다(제780조 참조). 이러한 공업소유권은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베트남에서도 민법의 발효로 공업소유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외국인, 법인 관련 민법규정

베트남민법은 1992년의 개정 헌법 제14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제826조 내지 제838조에서 외국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는 외국인, 외국법인이 참가한 민사관계를 말하며, 또한 외국에서 발생한 민사관계 또는 외국에서 민사관계와 관련된 재산확립, 변경, 종결을 위한 근거를 말한다(제826조 참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민법의 각 규정은 외국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며, 본 법에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서 본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아가 본 법에서 외국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다른 법률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이 인용, 예시되면 외국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하여 외국법률을 적용한다(제827조 참조). 이 경우에 외국법률, 국제관습법 적용은 그 적용 또는 적용결과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제828조 참조). 그러므로 당사자가 계약으로 외국법률의 적용에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본 법의 규정 및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합의된 외국법률이 적용된다.

VII. 결 론

베트남민법은 과거 중앙집권적 경제체제 하에서 국영기업, 집단농장의 한 구성원으로 일하고 그리고 평균적 분배정책 하에서 의식주를 해

결할 수밖에 없었던 인민들에게 자기 노력으로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이는 개방, 개혁정책을 표방한 1992년 개정 헌법의 이념이 구체화 된 것으로, 이러한 개혁정신이 민사교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한 법률장치이다.

그러나 민법은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므로 베트남민법에서는 여전히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잔재가 남아 있다. 예컨대, 민사관계 전반에 걸쳐 국가이익, 공공이익을 강조하고 있으며, 베트남 민족의 미풍양속, 사회도덕 등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체제에서는 가구·협동조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소유형태도 국가조직 체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이외에도 사회사정을 반영하여 권리의 객체에 대한 용의권과 담보권 형태가 미비하며,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베트남민법에서는 인민의 권리신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신권을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토지소유 형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권리분쟁을 고려하여 민사채무의 집행방법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의 관계발전을 원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외국인, 법인이 관련되는 민사관계” 조항을 민법에 두었다. 이를 통하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주권을 확실히 하고,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분쟁시에 국제조약을 준수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 나라의 사법은 그 나라 국민의 역사와 전통, 생활 및 관습을 내포하고 있다. 베트남민법은 베트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므로 그들의 눈으로 조망하되, 그를 보는 관찰자의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자못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논문주제검색키워드 : 베트남민법, 민사권, 인신권, 가구·협동조, 토지사용권

<Abstract>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Vietnam Civil Law

Chong, Jin Myong

Vietnam published the civil law through the act 79/SL in 22nd of may in 1950, and then, has enacted the civil law suited for the situation of new politics and economics since the reunion in 30th of april in 1975. According to the change of domestic situation, however, Vietnam inaugurated "Research Committee for Civil Law", which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organizations of government, Vietnam Union and society and which is supposed to legislate the law. In this center, they prepared a draft of Vietnam civil law through researching other country's civil law for 15 years by 1995.

Vietnam civil law was passed in the parliament in 28th of october in 1995 and prime minister published it in 9th of november in 1996. Vietnam civil law composed a preamble and 7 acts and 838 articles has been practised since 1st of july in 1996.

It is concreted law of "General Principle of Vietnam Communism" adapted through the country meeting held in june of 1991 and of new constitutional law of 1992. Therefore, presented civil law, which has been developed traditional Vietnam civil law and concreted the new constitutional law of 1992, has an important place in the legal system of the country.

Civil law in Vietnam is the legislating means making profitable

condition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making civil communication active. Especially, it, under the system of the government intending for social democracy, has the purpose for establishment of various products economy, strong country with rich people, fairness and civilized society.

Therefore, in this thesis, it has been studied how the civil law in Vietnam has been developing in the free economic system, is the system of social democracy and what special characteristics it has.